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정원) 및 모집방법】

①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재가급여를 인정 받은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② 이용정원

- 방문요양 이용정원은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았으며, 근로가 가능한 요양 보호사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야간보호정원은 현재 45명이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정원의 10%범위 내 초과 허용할 수 있으며, 시설증축으로 시설변경 시 정원은 변경될 수 있다.

③ 모집방법

-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의 내방, 전화 문의 등을 통한 모집
-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리플렛 배포를 통하여 모집
-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내 서비스 수급자를 파악

제6조 【이용계약】

1. 계약기간

- ①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 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등급갱신이나 서비스급여내용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를 통보하여 재계약 체결 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의 해지

수급자 및 수급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30일 전에 구두 및 유선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기관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7 조 【이용료 등 기타비용부담】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 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
상자는 6%,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 ② 급여종류별 이용료

1.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026.01.01기준)

분류번호	제공시간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 가.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정한다.
- 나.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간격이 2시
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라. 1,2등급 수급자는 240분 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3,4등급 수급자는 180분이하 요양만
가능한다. 단,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은 월 8일에 한하여 270분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급여 제공이 가능하며, 3,4등급은 월 4회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제
공할 수 있다.(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요청사유 기재)
- 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
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바.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제8조 서비스의 내용 및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1.방문요양 제2,3,4,5항에 있음

마. 방문요양 동시 순차서비스 제공 기준이 완화되었다.

2.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서비스는 하루의 일정시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요양시설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야간보호서비스에는 수급자에게 개인위생, 일상생활지원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식사도움, 목욕 및 송영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2026.01.01기준)

분류	제공시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주야간보호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13시간 미만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③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3,000원 (주간보호 1식 2,500원 오전/오후 간식비 500원)
- 이·미용비
- 병원비 및 약제비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 8 조 【서비스 내용 및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 한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준비, 실행, 준비물품정리) - 일상생활함께하기 (잔존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 (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의 문제 상담) - 의사소통도움 (대화, 편지, 전화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대행)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급여제공기록지 기록, 보고, RFID시스템이용

②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④-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④-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 ④-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 ④-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보관
- ⑤ 5등급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2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을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 ⑤-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⑤-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시설을 갖추어 하루의 일정시간동안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 몸단장, 옷 갈아입기도움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 화장실이용하기(배뇨·배변도움,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건강 및 간호관리	- 관찰 및 측정(혈압, 체온, 맥박, 체중) - 건강관리 (관절오그라들예방, 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 간호관리(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호흡기간호, 구강간호) - 응급서비스(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 인지관리지원(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기능회복훈련	-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맨손체조, 발마사지, 회상훈련, 종이접기등) - 신체기능의 훈련(관절운동, 근력증강운동, 지구력훈련) - 기본동작훈련(기본동작, 일어나기, 앉아있기, 이동, 보행 도움제공) -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활동) - 인지기능향상훈련(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프로그램) - 일상생활동작훈련(식사, 배설, 목욕, 몸단장, 이동 동작 등 훈련) - 물리치료(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 작업치료(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훈련)
송영서비스	대상자의 집에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에서 집까지 대상자 이송
업무기록 및 보고	서비스급여제공기록지 , 기타필요서류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①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 급여계약체결 시 입소(이용)자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② 신원인수인은 입소(이용)자의 보호자 책임을 가진다.

③ 신원인수인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가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 급여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사항 발생 시 고지의 의무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알릴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 납부의 의무
- 이용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알릴 의무
- 보호자 역할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하여 알릴 의무
- 이용자로 인하여 시설의 설비,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급여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시 알릴 의무

④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 해지는 문서 및 구두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9 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획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전항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0 조 【특별한 보호】

-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②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이 점을 명확히 고지한다.
 -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대체할 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용자 발생 시 시설장은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및 관할 건보공단에게 전염병 발생 사실 보고 한다.

제 11 조 【의료서비스 및 응급조치】

- ①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에 대응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센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으며,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센터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12 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급여제공 요양요원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가족요양보호 제외)
- ④ 주간보호시설은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⑤ 면책범위
 - 1. 금융업무를 수행 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 2.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
 - 3. 질병감염 또는 식중독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 4.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서 발생한 배상책임
 - 5. 미용 또는 이외 준한 것으로 인한 업무